

##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

의안 번호	6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4. 6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# 제안이유

- 도시계획세(군세, 목적세)는 자치단체장이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후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음.

### 주요골자

-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평창읍, 대화면, 봉평면, 진부면, 도암면의 각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에 의거 고시된 전지역으로 한다.

### 고시안 : (별첨)

###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도시계획고시지역 현황 : 별첨

##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고시(안)

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평창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1999년 월 일

평창군수 권혁승

- 고시지역 -

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은 평창읍, 대화면, 봉평면, 진부면, 도암면의 각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에 의거 고시된 전지역으로 한다.

## 【별첨자료】

### □ 관계법령

#### ○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

「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·광역시 또는 시·군의회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시장·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」

#### ○ 평창군세조례 제84조

「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」

### □ 도시계획고시지역 현황

(단위 : km<sup>2</sup>)

읍면	구분	행정구역 면적	도시계획구역 면적	도시계획구역 비율
계		1097.13	14.76	1.35%
평	창	161.68	2.34	1.45%
대	화	165.77	3.3	1.99%
봉	평	217.26	1.86	0.86%
진	부	330.8	3.47	1.05%
도	암	221.62	3.79	1.71%